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에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에
더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
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이내	
사업명							
주관기관	국문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총계 (백만원)			
참여기관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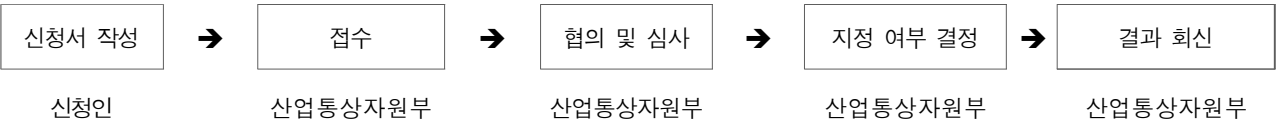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u>특성화대학</u> 또는 <u>특성화대학원</u>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 ----- <u>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u> -----.